

정부 R&D 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201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Content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 I. 추진배경
- II. 제도개선 주요내용
- III. 개정 사항별 시행시점
- IV. 안내 사항

Chapter I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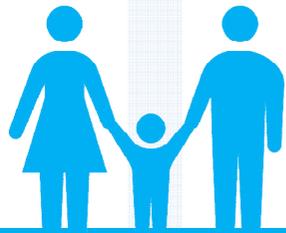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 철학인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발표가 이어짐

-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연구프로세스의 효율화,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책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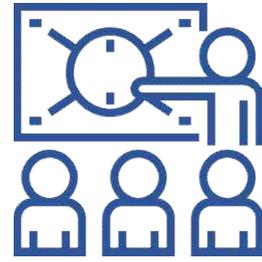
➔ 그간 발표된 정책들의 충실하고, 조속한 현장착근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주요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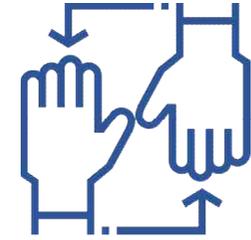
개정안 초안 마련 (9월)

- ✓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 전문가 참여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 ✓ 대학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논의 및 의견수렴 (10월)
- ✓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의견수렴 (9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의

- ✓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개최 (9월7일)
- ✓ 관계부처 공식협의 및 의견조율 (10월~)
- ✓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10월~)

Chapter II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 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2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 체계 강화
- 3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4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5 기타 제도개선



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 · 간소화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제9조제3항, 제19조제4항)

대부분의 연구과제는 매년 협약하고 집행잔액은 다음해로 이월이 어려움



계속과제의 경우 다년도 협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하고, 집행잔액은 이월 허용



종이영수증 제출 전면 폐지(제12조의2제9항)

영수증을 건건이 제출해야 함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 몰입 시간 낭비



연구비 집행 증빙 서류(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는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자 보관 지원



연구비 집행 자율 강화(규칙)

연구과제 착수단계에서 연구비 예측이 어렵고, 연구비 변경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연구비 사용용도* 별 총액만 기재하고 연구자가 자율 집행(연구활동비)

* 1. 출장비, 2. 특허경비, 3. 연구실 운영비 등 9개 항목

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 · 간소화



연구비 비목 간소화(별표2)

현재 연구비 비목 체계가 복잡하여 연구자들의 불편함을 야기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로 이원화 되어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연구비 정산 간소화(별표2)

대학의 연구실운영경비를 연구비에서 계상하기 곤란하여 편법적 사용이 빈번



연구실운영비를 신설하고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증빙서류는 연구자가 보관(정밀정산 대비)

✓ **참고 :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 1일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 구현 (도입 이전에 상세한 매뉴얼 마련 예정)

2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 체계 강화



대학의 연구간접비 별도 계정 관리(별표2)

대학의 연구간접비가 산학협력회계 내에 다른
재원과 섞여,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파악이 곤란**



대학의 연구간접비가 **연구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의무화**



행정지원 인력 확충(별표2)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 없고, **기관 지원에만 의존**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의 경우에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원 허용



범부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25조제29항)

기관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비효율 초래**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제6조제4항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체계가 부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에 한함



학생인건비 안정적 운영 의무화(제12조의3)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 하고 있으나,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은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명시



연구시설·장비비 풀링제 도입(제12조의4, 별표2)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구 과제별로 각각 사용하며, 연구과제 기간내에만 사용 가능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 '연구장비 통합관리 지침' 제정 중 (9월 1일 까지)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제8조제3항)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도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는 사례 빈번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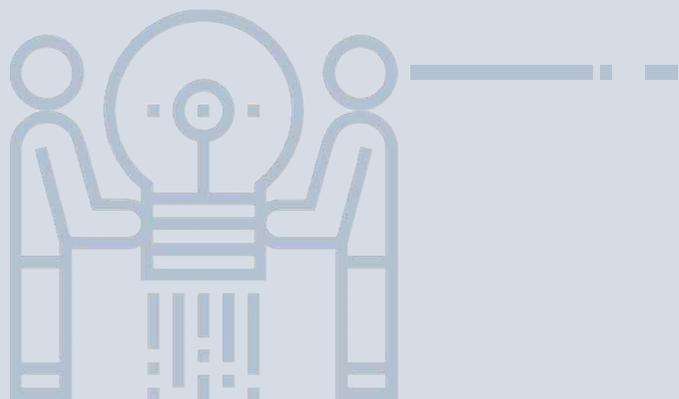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보장(제9조제7항)

학생연구원은 같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기술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중복 예외기준 명확화(제7조제11항)

중복 예외기준이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되어 있음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인정



3책5공 기준 완화(제32조제2항)

3책 5공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원칙보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



3책 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 과제 신청 마감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 과제 신청 마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선정평가 기준 완화(별표1)

선정평가위원을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동일 학교·기관* 에 소속되어 있어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 위원으로 배제하지 않음 * 대학, 출연(연), 특정(연)



평가결과 공개 확대(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평가결과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선정평가
뿐만 아니라,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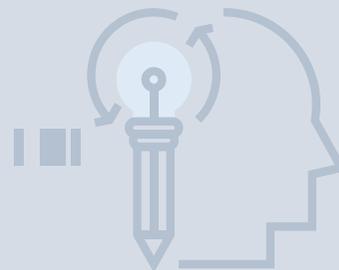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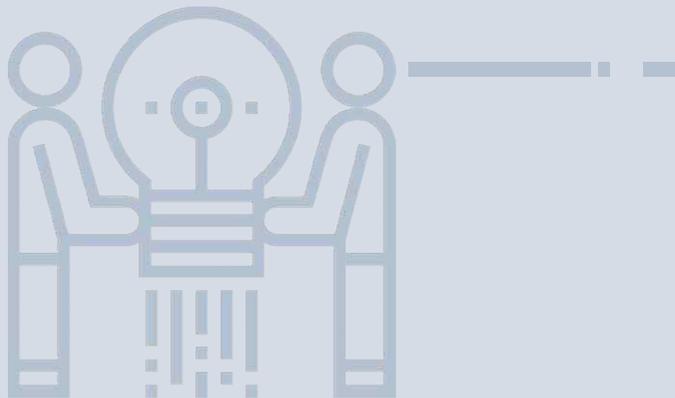


기술창업 지원기간 연장 허용(별표2)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은 설립
이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연구간접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종전 5년)의 연장을 허용**



Chapter III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개정 사항 시행시점

주요 개정 사항별 시행시점



제 · 개정내용	제 · 개정조문	적용례/경과조치
중간, 최종, 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	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공포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증명 서류 첨부	제8조제3항	
3책 5공 허용기간 연장	제32조제2항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제9조제3항, 제19조제4항	'19년 9월 1일부터 적용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제9조제7항	
연구장비 유지, 보수비 통합관리 도입	제12조의4, 별표2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근거 마련	제25조제29항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별표2	'19년 9월 1일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연구비 비목 간소화(연구과제추진 비 삭제)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면제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지원 기간 확대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제12조의2제9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제12조의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6조제4항	
연구목표,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연구과제 중복을 인정		'19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Chapter IV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안내 사항



안내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18.12월) 주요내용

1 | '연구비 용도외사용'을 '부적정집행'과 '부정집행'으로 구분하고 처분 기준을 명확화

구분	개념	처분기준
연구비 부적정집행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부적정 집행한 연구비는 회수하되 제재처분은 면제
연구비 부정집행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부당한 이익 향유	아량 없는 제재처분 - 부정집행이 행해진 과제마다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 - 연구부정과 관련 없지만 진행중인 다른 연구과제에서도 즉시 배제

2 | 연구기관의 연구비 환수책임 명확화

- ▶ 참여제한에 따른 연구비 환수금에 1차적 납부책임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 ▶ '19년 상반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을 제정할 예정

안내 사항

연구현장 협조 요청사항



1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즉시 철폐

▶ 연구비집행 증빙서류(종이영수증) 를 하드카피로 제출받아 보관하는 관행 여전

※ (이유) 감사 (대학 자체감사, 부처 감사 등) 및 정밀정산 (전문기관)에 대비해 과제마다 종이영수증 철을 미리 만들어 둬

- 금번 대통령령에 연구비집행의 증빙은 전자적 방식으로 같음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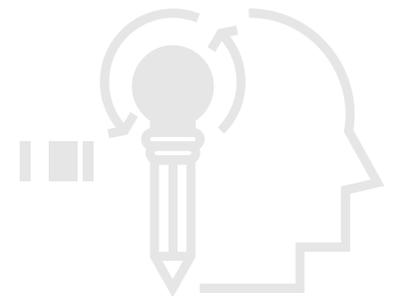
▶ 제도라기 보다 관행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폐기 요망,
감사 및 정산 시 종이영수증 철을 요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리·감독

2 |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충실한 시행

▶ 7년이 지나도록 정착이 부실

- 금번 대통령령에 학생인건비 별도계정 통합관리 의무화

- ▶ 모든 부처 R&D 과제에 전면적인 학생인건비 풀링,
- ▶ 학생인건비가 풀링 계정으로 산입되면 연구과제와 꼬리표를 삭제
- ▶ 연구과제 정산 시 학생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음



▶ 내년 '비영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신설)'에 반영할 계획임

Thank you

정부 R&D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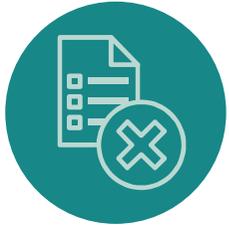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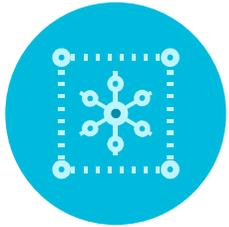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평]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정착을 위한 남은 과제



- 1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 있는 **넓은 규제 혁파**
- 연구몰입 저해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 2 R&D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R&D감사 확립**
- 규제 양산의 재발, 보수적 행정 문화 해소



- 3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지원시스템 도입**
- 시스템을 통한 연구몰입 환경 정착



- 4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창의적·도전적 R&D 혁신 추동

1.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 있는 **남은 규제 혁파**

진단

규제의 양상

(원인) 감사결과 후속 조치, 상급기관의 요청, 행정부서의 편의, 보수적 규정운영 등
(형태) 부처·전문기관 지침, 공문, 기관의 자체규정·매뉴얼 등

영향

기관행정 전반에 보수적인 관행 양산

- 창의적 연구활동·연구몰입 저해
-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이행 지연

추진 방안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일소

* KIST, 생기연 GIST 시범 발굴 완료

1단계

해소할 규제 발굴 (5월~6월)

규제옴부즈만을 구성:
대학, 출연연, 기업 등 분과

2단계

**분과별로 발굴한
규제 정리 및 논의 (7월)**

(가칭) 규제혁파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마련

3단계

규제혁파 방안 마련 (8월)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정착을 위한 남은 과제



예시

시범 발굴 한 규제 사례

통보성 협약 변경 사항임에도 매번 전문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수시 보고해야 함



연구비 정산 시 참가자의 전원 서명 날인이 들어간
회의록을 필수 제출해야 함



소액의 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1년 전 장비 수요조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구매가 어려움



2. R&D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R&D감사 확립

R&D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감사문화 정착

◆ 그간의 경과

- 과기정통부는 그간 감사원과 국가R&D 감사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감사원에서는 TF운영을 통해 R&D감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중
 - 회계의 책임보다 성과제고 중심의 감사
 - 연구몰입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도와주는 감사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전컨설팅 등 도입

◆ '(가칭) R&D 20조원의 새로운 감사방향' 마련을 준비 중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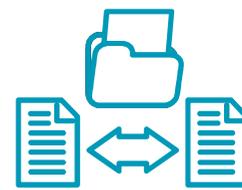
회계위주, 지적위주의 감사

R&D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고려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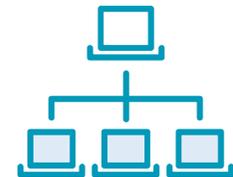
연구자를 위축시키는 감사

연구자가 감사부담을 떠안음,
현장 입장이 반영되지 못함,
감사결과도 불투명



비효율적인 중복감사

R&D감사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관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함



보수적 행정, 규제양산으로 이어지는 감사 결과 후속조치

3.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지원시스템 도입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

개정된 공동관리규정 내용이 반영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9월1일자로 본 서비스를 개시하고 전 부처로 도입됨. 시스템 통합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효과가 발생함.

→ 공동관리규정에 없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연구비 행정의 표준화 및 간소화가 상당부분 진척

개선사례 예시

- 일괄지급 방식(대학, 출연(연) 등)의 경우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기한을 D+5일로 통일
- 연구비 집행 관리항목을 표준화 및 대폭 간소화(12개 부처 526개 정보 → 340여개 공통정보)
- 정산보고서 서식을 표준화간소화(4종)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산보고서 자동생성 지원

→ 부수적인 연구비 행정 개선효과도 발생

개선사례 예시

-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는 연구기관을 위해 시스템에서 카드매출전표 전자 보관 지원
- Ezbaro, RCMS 각 통합시스템별로 하나의 통합 연구비카드 이용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서류의 온라인 자동 확인 기능 지원

과제지원 통합시스템

과제관리 전반에 걸쳐 부처간 합의한 업무방식으로 일제 정비되며 21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2년에 전부처로 도입될 예정임

→ 범부처 협조를 거쳐 표준화된 과제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이슈도 발굴 대응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전문기관/연구기관 시스템 간 연계작업을 진행 중임
관계기관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체 시스템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배경

- ▶ 정부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
-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입법안 주요내용

연구 현장

- **프로세스 혁신** 연구자 자율·창의 확대, R&D 도전성 강화
 - *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선정평가 전문성 강화, 연구비 명세서 폐지, 연구비 이월 및 단계종료 후 정산
- **연구 - 행정 분리** 연구지원 전문성 강화,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 * 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책무 부여, 연구기관 별 연구지원 전담인력·조직 확보, 연구지원 체계 평가 실시
- **권익·책임 강화** 연구자 권익은 보장하고 연구부정 제재는 강화
 - * 이의신청제도 확대, 부정행위 시 제재 강화(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 5배 범위 내)

규정 및 정보시스템

- **모든 사업에 법 적용** 정부R&D 사업의 공통기준 및 원칙 확립
- **정보시스템 통합** 편리하고 투명한 R&D 지원, 연구부정 방지
 - * 연구개발정보처리(수집·생산·관리·활용) 의무 명시, 단일 PMS(과제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정책·제도 전달 및 개선

- **전문기관 관리** 전문기관 책임성 강화,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 * 전문기관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실시, 전문기관 지정·운영실태 평가 실시
- **현장소통, 제도개선 정례화** 지속가능한 국가 R&D 시스템 혁신
 -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도입, 상시적 의견수렴, 관계법령 및 행정제도는 매년 일괄 정비